

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(기관명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)

2017. 5.



고용노동부
감사관실

【 순 서 】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대상기관	1
2. 감사범위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중점 사항	1
II. 감사대상 현황	2
III. 감사결과	3
1. 총평	3
2. 지적사항 총괄	3
3. 분야별 지적사항	4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 대상기관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
2. 감사 범위: '14. 6. 21.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

3. 감사 기간 및 인원

- 기간: '17. 2. 20. ~ 2. 24.(5일간)
 - * 직전 종합감사: '14. 6. 16. ~ 6. 20.(5일간)
- 인원: 감사담당관 외 4명

4. 감사 중점사항

[공통사항]

-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
-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

[고용센터]

- 예산집행, 물품관리, 채납처분
- 개인정보 보호,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
-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

[근로개선지도]

-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, 임금채권보장 업무
- 지명수배(통보)·해제, 인·허가 등 승인 업무 등

[산재예방지도]

- 중대재해 조사, 작업 중지명령, 사업장 지도·감독 업무 등

II. 감사대상 현황

- (행정대상) 관할지역은 5개 시(안양시·광명시·과천시·군포시·의왕시)로 사업장 53,508개소, 근로자수 286,434명('17.1월 기준, 고용보험통계)
- (지역특성)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75.8%(40,558개)를 차지, 300인 이상 사업체는 0.19%(102개)
 -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5.3%(13,516개)로 가장 높고, 음식숙박업 16.5%(8,823개), 제조업 14.7%(7,839개) 순
- (고용동향) 안양지역 고용률은 56.3%('16.4월 기준)로 전국 평균(60.3%)보다 낮고, 실업률은 4.4%로 전국 평균(3.9%)보다 높음
 - 안양지역 취업자는 706,100명으로 전년 하반기('15.10월 기준) 대비 3,600명 증가(▲0.5%)
 - 실업자는 32,900명으로 전년 하반기('15.10월 기준) 대비 1,300명 감소(▼3.8%)
- (노사관계) 관내 노동조합 94개소(조합원 13,556명) 중 한국노총 48개소(9,563명), 민주노총 4개소(1,357명), 상급단체 미가입 42개소(2,636명)
- (산업안전) '16.11월 기준 산업재해율이 0.40%으로 전국(0.45%) 대비 낮은 수준
 - ※ 산업재해율: 0.44%('14.11)→ 0.41%('15.11) → 0.40%('16.11)
- (직원현황) 17.2.16. 기준, 정원 108명, 현원 104명(충원률 96.3%)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○ 고용센터

- 취업지원 업무, 고용보험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,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정산업무 등은 다소 미흡

○ 근로개선지도 업무

-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, 임금채권업무, 지명수배(통보)자 소재발견처리 업무가 일부 소홀

○ 산재예방지도 업무

- 사업장 감독 확인결과 보고지연 및 과태료부과 업무 등 다소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실제 조치 건수	총괄 조치 건수(건)			신분상조치(명)				재정상조치(천원)				행정상조치(건)			모범 사례 (명)
	신분상 조치	재정상 조치	행정상 조치	소 계	징 계	경 고	주 의	소 계	회 수	추 징	기 타	시 정	개 선	통 보	
15*	10	2	2	17**	-	6	11	9,194	9,194	-	-	1	-	1	-

* 신분상 조치대상자가 1명인 3건은 '경고'로 병합 처분하여 실제조치건수가 총괄조치건수보다 많음

**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5명(중복 처분: ○○○ 등 2명)

3. 분야별 지적사항

가. 고용센터 분야(지역협력, 고용관리, 부정수급 조사 분야 포함)

① 계약업무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을 지명하는 등 계약 업무 소홀(9건)
- (조치사항)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'주의' 조치

② 직업정보제공사업체 지도·점검 미실시(주의)

- (위반내용)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매분기 지도·점검하여야 하나 '14. 2/4~4/4분기 지도·점검 미실시(5개소)
- (조치사항) 지도·점검을 미실시한 ○○○ '주의' 조치

③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(정년연장) 지급 부적정(회수)

- (위반내용) 정년연장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(정년연장)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900,000원 과오 지급(1개소)
- (조치사항) 지원금 900,000원 '회수' 조치

※ 부적정 지급 건이 1건인 점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 생략

④ 인턴지원금 부정수급(회수)

- (위반내용)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(2개소 2명, 지원금 8,294,020원)
- (조치사항) 인턴지원금 8,294천원 '회수 등' 조치

※ 지급 당시 알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 생략(진정사건 확인)

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정산 소홀(통보)

- (위반내용)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정산 시 전년도 인쇄비*에 비해 현저히 인상된 금액을 사업비로 정산(부정수급 의심)
* 훈련생 모집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'15년 900부를 3백만 원 집행('14년 1,000부에 1백만 원 집행)
- (조치사항)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

㉕ 일학습병행제 부정행위 신고 접수절차 부적정(주의)

- (위반내용) 부정행위를 자진신고(구두)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접수하지 않고 조사완료 후 접수
- (조치사항) 부정행위 신고내용을 즉시 접수하지 않은 ○○○ '주의' 조치

나. 근로개선지도 분야

㉖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(경고, 주의)

- (위반내용) 고소·고발·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,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처리과정에서 43~99일간 방치(13건)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
- (조치사항) 신고사건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6명 '경고', △△△ 등 5명 '주의' 조치

㉗ 지명수배(통보)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(㉖과 병합 경고)

- (위반내용) 지명수배(통보)자 소재발견 시 출석요구, 소재수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지연 조치(4건)
- (조치사항)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은 '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'과 병합하여 '경고' 조치

③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등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사업장 감독 후 결과보고 지연(3건),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지연(1건) 및 기한 내 미보고 사업주에 대해 걱정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(4건), 사업장 감독 확인감독 보고지연(8건)
- (조치사항) 사업장 감독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'주의' 조치

※ △△△은 ① 사항과 병합하여 '경고'

④ 인·허가 등 승인업무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인·허가, 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0~71일까지 지연 처리(16건)
- (조치사항) 인·허가 등 승인업무 등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'주의' 조치

※ △△△은 ① 사항과 병합하여 '경고'

⑤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소홀(시정)

- (위반내용) 도산등사실인정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미운영
- (조치사항)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 조치

⑥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횟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과소 부과(8건)
- (조치사항) 과태료 부과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'주의' 조치

다. 산재예방 분야

① 감독결과 조치 확인업무 소홀(나-①과 병합 경고)

- (위반내용)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를 수보하고도 인사발령시까지 확인감독을 미보고(5건)
- (조치사항)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은 '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'과 병합하여 '경고' 조치

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신고사건 처리 소홀(나-①과 병합 경고)

- (위반내용)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36~100일간 방치(4건)
- (조치사항) 신고사건 4건을 소홀히 처리한 ○○○은 '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'과 병합하여 '경고' 조치